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8. 12. 24.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2월 19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8년 12월 21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61회 정기회 제15차 행정위원회('98. 12. 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 가. 제안이유
 - 새마을이동도서관 이용자 감소와 운영비 증가 등으로 '98. 12. 31까지 운영하고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조례를 폐지코자하며, 조례폐지후 동단위문고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조례폐지
 -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방침 제958호('98. 9. 11)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준석)

자치구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여 운영해온 이동도서관 이용자가 감소추세에 있고 동새마을문고와 이원적 운영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동단위 새마을문고를 활성화시키고자 동조례(안)을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이동도서관을 폐지하고 동단위 새마을문고의 활성화를 위해 일원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35
------------	----

제출년월일 : 1998. 12. 19.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폐지이유

새마을 이동도서관 이용자 감소와 운영비 증가 등으로 '98. 12. 31일까지 운영하고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조례를 폐지코자 하며, 조례 폐지후 동단위문고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조례폐지

3. 폐지근거 :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방침 제958호('98. 9. 11)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필요없음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8. 12. 24.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1월 2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8년 11월 23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61회 정기회 제14차 행정위원회('98.12.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정인화)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물품취득가격(장부가가격기준) 1천만원 미만으로 포괄규정하고 있어
 - 발생하는 불용품이 저가이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요조회를 하게 되어 행정적인 낭비요소가 있어 이를 시정하고 신속한 물품관리를 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불용품의 소요조회 1천만원 미만을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을 소요조회토록 개정함(안 제3조제3항)